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신청 검토보고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길음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대지위치 :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9,488.0㎡

■ 조합원수 : 137명

■ 건립규모 : 지하4/지상24층, 아파트 5개동

399세대(소형40) 및 부대복리시설

■ 시 행 자 :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추진경위

○ 2006.10.19 :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시 제2006-357)

○ 2009.03.19 :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고시 2009-111)

○ 2009.11.27 : 조합설립인가

○ 2011.06.02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결정고시(서고시 2011-143)

○ 2012.06.14 : 사업시행인가(성고시 제2012-89호)

○ 2012.07.02.~09.19 :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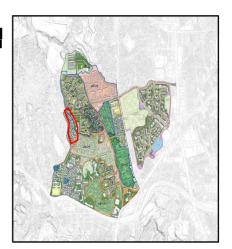
○ 2013.04.17 : 사업시행변경(경미한) 인가

○ 2014.07.03.~08.01 : 관리처분계획(안) 주민공람

○ 2014,08,05 : 공람의견 심사(총 22건 제출, 채택 10건, 불채택 11건, 일부채택 1건)

○ 2014.12.23 : 관리처분계획(안) 조합총회 개최

○ 2014.12.3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조합→구)



Ⅱ 관리처분계획 주요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주택분양	16,015.78	5	지하4 층 ~	399	65,272.50
·········· 상가	382,22	-	지상24 층	-	977.20
소계	16,398.00	16		1,562	66,249.70

■ 토지이용계획

78	ᅰ	FH 71		정미	비기반시설			ul ¬
구분 :	계	택지	소계	도로부지	공공공지	공 원	경관녹지	비고
면적(m²)	19,488	16,398	3,090	1,241	194	948	707	
비율(%)	100	84.14	15.86	6.37	1.00	4.86	3,63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상가			
공급대상	계			59 m²			73			84 m²			상가 면적 (㎡)
	71	Α	В	С	D	Т	m²	Α	В	С	D	Е	(m²)
계	399	80	14	12	17	9	39	107	55	39	11	16	977.20
조 합 원	139	55	8	3	4	5	11	48	3	2			
보류시설	3	1					1	1					
일반분양	217	12	4				27	58	52	37	11	16	
소형주택	40	12	2	9	13	4							

■ 권리자별 관리처분

ココフレム		혐의매수·			
권리자수	소계	공동주 택	주택+근생	근린생활시설	매도청구
161	136	136	-	-	25

	신 설						용도폐지	
<u> 주</u>	류	명칭	규모	설치비 용	관리청	종 류	명칭	규모
도	로	중로2-418외2	1,241.00	4,509,110,000	성북구	도로	도로	3,843.00
공	원	소공원	948.00	3,292,531,000	성북구			
경관	녹 지	녹지	707.00	2,726,604,000	성북구			
고고 00	공지	공공공지	194.00	651,200,000	성북구			
7:	#		3,090.00	11,179,445,000				

Ⅲ 관계서류 공람 및 결과

■ 공람내역

○ 건 명: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안) 주민공람

○ 공람기간 : 2014.07.03.~08.01(30일간)

○ 제출의견

계	종전자산평가액 상향요구	평형변경 요구	기타	비고
22	8	11	3	

■ 공람심사 결과

○ 일 시 : 2014.08.05.15:00~ (장소 : 조합사무실)

○ 참석자 : 총 7인(조합임원 5인 + 대의원 2인)

○ 심사결과 : 평형변경 요구 11건 채택 외 11건 불채택

Ⅳ 총회개최 및 의결

■ 총회개최 및 결과

○ 일 시 : 2014.12.23.(화) 18:00~20:00 (장소 : 빅토리아호텔)

○ 총회결과

직접참석률(전체조합원의 20%이상)			의결요건(조합원 과반수 이상)					
조합원수	서면제 출 참석자	서면미제 출 참석자	참석 률	조합원 찬성 반대/기권 동의율			동의율	비고
137	38	19	41.6%	137	79	10	57.66%	

Ⅴ 검토결과

■ 검토기준 및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분	관련규정	검토기준	검토사항	비고
분양공고 분양신청	법 제46조	분양공고 ·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 · 일간 신문에 공고 : 세계일보	적정	
		분양신청기간 · 2013.07.02. ~ 09.19.	적정	
총회결의	법 제24조	조합정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결의	적정	
공람	법 제49조	· 공람주체 : 사업시행자(조합) · 공람기간 : 2014.07.03.~08.01.(30일)	적정	
공람의견 심사통보	표준정관 제53조	 이의신청 내용 검토하여 합당한 의견은 관리처분계획 수정 등 필요한 조치 조치내용을 공람공고 마감일로터 14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 	적정	
신청서류	령 제11조	· 관리처분 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및 분양신청서 사본	적정	
관리처분 계획내용	법 제48조 령 제50조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적정	

구분	관련규정	검토기준	검토사항	비고
관리처분 계획내용	법 제48조 령 제50조	 현금청산대상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명세와 청산방법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보류지 등의 명세,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1필지의 대지 및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시 비용부담비율에 의한 분양계획과 비용부담 한도,방법 및 시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적정	
	조례 제26조	종전토지 소유면적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법에 의한 토지대장에 따르며,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 비율을 기준으로 함.	적정	
		국공유지 점유 연고권 · 국공유지 점유 없음	적정	
관리처분 계획기준		종전 건축물 소유면적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하며, 법령에 위반된 부분은 제외함.	적정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접수일자 기준으로 함. 기존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적정	

구분	관련규정	검토기준	검토사항	비고
관리처분 계획기준	주택 재건축사업 분양대상 (조례 제28조 제1항)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 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 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조합원 분양: 139세대	적정	
	수인의분양 대상자를 1인으로 보는 경우 (조례 제28조 제2항)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1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적정	
	자 금운용 계 획	1. 비례율 : 98.79% <u>총수입추산액 - 공통부담소요비용</u> 분양대상 토지등의 총 평가액 2. 총 수입추산액 : 165,300,440,000원 공통부담소요비용(지출) : 127,962,178,348원 분양대상토지등의 총평가액 : 37,795,588,270원	적정	
임대주택 (소형주택) 매각 등	소형주택 의 인수를위한 절차와 방법 (법제30조의3 제3항,제6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 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소형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형주택: 40세대 		

구분	관련규정	검토기준	검토사항	비고
	령 제52조 제1항 8호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의 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정관 등이 정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한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은 총가구수의 50%까지 분양하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한다(단, 분양받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 청산하여야 할 경우 부족분에 한하여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가능) 	적정	
보류지	조례 제31조	분양대상자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여 보류지를 확보한다. · 총 건립세대수의 1% 범위 ·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하여 인가 받음 · 보류지 : 3세대	적정	
일반분양	조례 제34조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보류 지를 제외하고는 일반분양하며, 공동주 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일반분양 : 217세대	적정	
인권영향 평가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제25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인권영향평가실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획의 확정전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세부절차에 대한시행규칙 및 세부지침을 검토중이므로관리처분 인가관련 일정 계속 진행바람(감사담당관-955, 2015.1.21)	해당없음	
인가시기 조정	법제77조의5 및 조례 제56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대상 ·정비구역 멸실 호수가 자치구 주택재 고수의 1% 초과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 초과 ※ 당해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정 심의대상 아님(기존 주택수 70호)	해당없음	

구분	관련규정	검토기준	검토사항	비고
	성북구 정비사업구역 공가관리 종합대책 (사업시행인 가조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CCTV설치 및 주·야간 경비 및 방범순찰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제출 · 「조합원 이주에 따른 공가관리 및 범죄 예방계획」보고서 제출	적정	
기 타	지역경제 활 성 화 방 안	 ○ 조합운영과정 - 조합운영비 거래은행 지역마을금고 - 학생 통학로 안전 관리원 배치 시 지역 어머니회 등 유휴인력 활용 ○ 사업시행과정 - 인력고용 : 성북구 인력소개소와 정비사업장 협약체결 지역주민 우선고용 · 단순노무 상시근무 및 일시적 사용 - 하도급 업체 선정시 성북구 소재 업체우선협상 대상자로 본사에 보고. · 품질과 관련성이 적은 입주자 청소업등은 적극적 지정 - 전문성이 필요한 공종은 영업실적 및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현장 내 사용연료 성북구 주유소 활용 · 장비사용 및 차량 기타 연료 성북구 소재주유소로 단가계약 체결 - 장비 임차시 성북구 소재 중장비 임차 여장 내 사용 소모품 :성북구 소재 업체와계약체결 사용 · 안전용품, 안전시설, 소공구 등 - 사무실 사무용품 : 성북구 소재 사회적기업과계약체결 · 종이, 문구류, 토너 등 ·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제출 	적정	

VI 처리의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관계서류 공람 등 인가를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 2. 12.

검 토 자 : 지방시설주사보 라 전 희